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중

2018년 04월 20일

우리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예·결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와 현금흐름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산학협력단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산학협력단의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 정관상의 예·결산자문위원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와 현금흐름의 내용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17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세원합동공인회계사감사반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7년 4월 20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구 신촌로 24 바동 3083호
천일 공인회계사 감사반(제 267 호)

공인회계사 강 경 숙



공인회계사 노 문 섭



공인회계사 윤 권 화

